

지급이자 조정명세서(1)										
①과세기간	년	월	일부 부터 일까지	상 호		③ 성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및 건설자금이자										
④ 지급이자 총액		⑤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⑥ 건설자금의 이자		⑦ 지 급 이 자 (④-⑤-⑥)			
2.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⑧ 이자율	⑨지 급 이 자 (④-⑤-⑥)		⑩ 초과인출금의 적수 (⑩≤⑪)		⑪ 차입금의 적수		⑫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 금액(⑨×⑩/⑪)			
3.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⑬ 이자율	⑭ 지급이자 (④-⑤-⑥-⑫)		⑮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의 적수(⑮≤⑯)		⑯ 차입금의 적수		⑰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 금액(⑭×⑮/⑯)			
4. 지급이자 및 차입금 적수계산										
<18> 이 자 율	<19> 지 급 이 자	<20> 차 입 금 적 수	채권자가 분명한 차입금이자		건설자금 이자		초과인출금 이자		차 감	
			<21> 지 급 이 자	<22> 차 입 금 적 수	<23> 지 급 이 자	<24> 차 입 금 적 수	<25> 지 급 이 자	<26> 차 입 금 적 수	<27>지급이자 (<19>-<21> -<23>-<25>)	<28>차입금적수 (<20>-<22>-<24>-<26>)
합계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작성방법

[지급이자 조정명세서(1)]

1. 지급이자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건설자금의 이자, 초과인출에 대한 지급이자,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순으로 조정하여 필요경비에 불산입합니다. 다만, 서로 다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이자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부터 먼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2. ④지급이자 총액란 : 손익계산서(별지 제40호의7서식) 및 제조원가 명세서상(별지 제40호의8서식)의 지급이자총액을 기재합니다.
3. ⑨지급이자 소계란 : ④의 지급이자 총액에서 ⑤,⑥의 금액을 차감한 지급이자(⑦의 금액)를 기재합니다. 다만, 서로 다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이자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부터 먼저 기재합니다.
4. ⑩차입금의 적수란 : <22>차입금의 적수에서 <22>, <24>의 해당 적수를 차감한 적수를 기재합니다. 다만, 서로 다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이자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부터 먼저 기재합니다.
5. ⑭지급이자 소계란 : ④의 지급이자 총액에서 ⑤, ⑥, ⑫의 금액을 차감한 지급이자를 기재합니다. 다만, 서로 다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이자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부터 먼저 기재합니다.
6. <16>차입금의 적수란 : <20>차입금의 적수에서 <22>, <24>, <26>의 해당 적수를 차감한 적수를 기재합니다. 다만, 서로 다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이자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부터 먼저 기재합니다.
7. <19>지급이자 합계란 :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 명세서상의 지급이자총액을 기재합니다. 다만, 서로 다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이자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부터 먼저 기재합니다.
8. <20> · <22> · <24> · <26>차입금적수란 : 해당 이자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적수를 기재합니다.
9. ⑩초과인출금의 적수가 ⑩차입금의 적수보다 클 때 그 초과하는 부분과, ⑮업무와 관련 없는 적수가 <16>차입금의 적수보다 클 때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작성방법

[지급이자 조정명세서(2)]

1. ⑤부채의 합계란에는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 충당금 및 준비금과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 및 건설자금에 사용된 차입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임이 분명하고 해당 자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차입금의 이자도 분명하여 필요경비에 불산입된 것은 포함하지 않습니다.